

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개정이유

“단재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”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,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·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,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“단재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”로 제명을 변경함.
-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·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함.(안 제1조 내지 제3조)
-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, 고등학교장, 본청 국장에서 직속 기관장을 추가함.(안 제4조제1항)
-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13~15인으로 하고, 위원 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함.(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)

개정조례안 : 불임

참고사항

- 기타 : 임법예고(2004. 4. 23. ~ 5. 12.)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.

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

단재교육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교육상(이하 “교육상”이라 한다)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부문)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도부문
2. 학술부문
3. 공로부문

제3조(수상대상자)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사도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
2. 학술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,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
3. 공로부문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(사립학교 포함) 직원, 일반인, 단체 및 기관

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.

제4조(수상대상자 추천)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.

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(별지 제1호 서식)
2. 추천조서 (별지 제2호 서식)

3.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)

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,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 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.

제7조(수상후보자 심사)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
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.

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8조(수상자의 결정)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

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.

제9조(시상)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단재교육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】

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부 문	공 적 심 사 기 준
사도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○ 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
학술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○ 학술·예술·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·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
공로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실적○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서

○ ○ 부 문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 무 처 :

직 위 :

주 소 :

위 사람을 년도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수상 대상으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년 월 일

추천권자(기관명, 직, 성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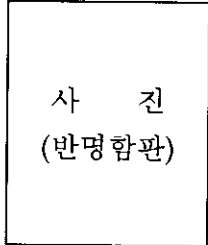
직(사)인

충청북도교육감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조서

○ ○ 부 문

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 무 처 :

직 위 :

주 소 :

1. 학 력

기 간	학 력	비 고

2. 경 력

기 간	경 력	비 고

3. 실적 및 공적개요

기 간	실 적 및 공 적	비 고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충청북도단체교육상 심사조서

○ ○ 부 문

심사위원

_____ (인)

_____ (인)

대상자명	근 무 처	심 사 의 견	추천순위